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55
----------	-------

발의연월일 : 2024. 1. 3.

발 의 자 : 이종배 · 이인선 · 성일종
안철수 · 김성원 · 정운천
양향자 · 정우택 · 박대수
홍문호 · 송석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상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반면,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이에 정부에서 지정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함(안 제11조의5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건실한 사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1조의2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백년소상공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가. 제조업, 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나. 가목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

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2. 생산·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소상공인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소상공인

②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백년소상공인의 확인) ① 백년소상공인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의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백년소상공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백년소상공인 확인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확인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2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제11조의3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확인을 받은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년소상공인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상공인으로 확인한 자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건설한 사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1조의2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11조의2(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백년소상공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가. 제조업, 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 설>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나. 가목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2. 생산·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소상공인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소상공인

②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백년소상공인의 확인)

① 백년소상공인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의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신 설>

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백년소상공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백년소상공인 확인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확인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신 설>

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2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제11조의3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확인을 받은

제30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
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략)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1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확인의 표시 또
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
나 백년소상공인이라는 명칭
을 사용한 자

2.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
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현행과 같음)